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64호

**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
개정 훈령(안) 행정예고**

2013. 12. 06

중 소 기 업 청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64호

「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2월 6일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훈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개요

□ 개정사유

- 「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(’09.5.25 개정)」의 체계적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

□ 법적근거

-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(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) 제3항

2. 주요내용

□ 위원회 구성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(제3조 제1항)

◦ (현행) 8명 이내 → (개정) 9인 이상 15인 이내

□ 위원의 직무 이행과 품위 유지에 흠결*이 있는 경우 해촉 (제4조 제5항)

*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,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기업청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, 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

□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(제5조 제3항)

* (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)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

□ 정부위원(장)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과장급 공무원이 대리 참여 (제5조 제6항)

□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거나 우리청이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제5조 제4항, 제9조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3. 12. 6 ~ 12. 25 (20일간)
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
5. 의견제출

「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 (우편번호 : 302-701,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/ 참조 : 규제영향평가과, 전화 042-481-4344, 팩스 042-472-327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붙임 1. 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(안)

2. 신·구조문대비표

(붙임1)개정 훈령(안)

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06. 4. 5. 중소기업청 훈령 제 211 호
개정 2008. 7. 8. 중소기업청 훈령 제 244 호
개정 2009. 5.25. 중소기업청 훈령 제 262 호
개정 2013.12.00. 중소기업청 훈령 제 000 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행정규제의 신설,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
2.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중소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종사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 등)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중소기업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
2.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기업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
3.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

제5조(회의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1. 위원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,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,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⑤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⑥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

지 않다.

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간사는 규제개혁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.

제8조(간사의 직무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·작성·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·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3.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·평가정리
4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

제9조(제척) 중소기업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, 민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, 안전검토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<제211호, 2006.4.5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62호, 2009.5.25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000호, 2013.12.00>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(훈령)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소기업청 <u>자체규제심사위원회</u> 운영규정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기업청 <u>자체 규제심사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정규제의 신설, 강화 등에 관한 <u>자체규제심사</u> 2.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<u>위원장 2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②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된다.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중소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종사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<u>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소기업청 <u>규제심사위원회</u> 운영규정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기업청 <u>규제심사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정규제의 신설, 강화 등에 관한 <u>규제심사</u> 2.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<u>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②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된다.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중소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종사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<u>위촉한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 등) ①<u>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 ②<u>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(문구수정) 자체규제심사 → 규제심사</p> <p>위원 수의 확대</p> <p>임기 관련 규정 신설</p>

<p>제4조(사전심사)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명 이상의 위원에게 심사안건의 규제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사전심사 결과 규제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</p> <p>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</p>	<p>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중소기업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.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기업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.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<p>제4조(사전심사) <삭제></p> <p>제5조(회의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<p>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</p>	<p>위원의 해촉</p> <p>(삭제) 운영의 필요성이 없음</p> <p>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</p>
--	--	--

<p>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<u>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상정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③ <신설></p> <p>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규제개혁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간사의 직무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·작성·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</p>	<p>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<u>관계 공무원, 전문가, 이해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,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위원회는 <u>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위원장 또는 위원이 <u>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정부위원이 <u>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③위원장이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규제개혁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간사의 직무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·작성·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</p>	<p>전문가 등의 위원회 참여 근거 마련</p> <p>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운영</p> <p>공정한 심사</p> <p>과장급 공무원의 대리출석 근거 마련</p> <p>위원장 부재시 조치방법</p>
--	--	--

<p>2.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·물품 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3.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·평가정리</p> <p>4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</p>	<p>2.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·물품 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3.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·평가정리</p> <p>4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</p>	
<p><u>제9조(제척) <신설></u></p>	<p><u>제9조(제척) 중소기업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.</u></p>	<p>안 전 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 원 의 제척</p>
<p><u>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, 민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, 안전검토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</p>
<p><u>부 칙 <제211호, 2006.4.5></u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부 칙 <제262호, 2009.5.25></u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부 칙 <제000호, 2013.12.00></u> <신설></p>	<p><u>부 칙 <제211호, 2006.4.5></u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부 칙 <제262호, 2009.5.25></u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부 칙 <제000호, 2013.12.00></u>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